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06

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이학영·황명선·박 정

박정현 · 강득구 · 김성환

김태선 • 이용우 • 김용만

김영배 · 전재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고등교육법」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.

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,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 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7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2항에 따른 취업정보 제공 및 제4항"으로 한다.

② 대학의 장은 해외인재 확보 및 외국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주 등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 선발 시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,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	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			
개정법률	개정법률			
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ㆍ	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ㆍ			
지원 등) ① (생 략)	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<u> <신 설></u>	② 대학의 장은 해외인재 확보			
	및 외국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			
	주 등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			
	선발 시 지원 학과 등과 관련			
	한 취업 동향, 취업비자 발급			
	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			
	<u>여야 한다.</u>			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$\underline{3} \cdot \underline{4}$ (현행 제2항 및 제3항			
	과 같음)			
④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	⑤ 제2항에 따른 취업정보 제			
험의 시기, 방법, 부정행위에	<u>공 및 제4항</u>			
대한 조치, 그 밖에 필요한 사				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		
	<u>.</u>			